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368호

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.

2024년 7월 4일

국토교통부장관

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

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5조제5항 중 “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·제3항”을 “제4조제2항·제3항”으로 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신청할 수 있다”를 “신청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운영계획서를”을 “운영계획서 또는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(이하 “운영계획”이라 한다)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운영계획서”를 “운영계획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운영계획서”을 “운영계획”으로, “운영계획서에”를 “운영계획에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해당 시범운영지구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가 제출한 시범운영지구 운영계획서의 내용과”를 “해당 시범운영지구 운영계획에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해당 시범운영지구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가 제출한 시범운영지구 운영계획서의 내용과”를 “해당 시범운영지구 운영계획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) ① (생략) ②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, 민간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. 1. 정부위원 :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2. 민간위원 : 2년	제3조(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삭제)
제5조(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실무위원회) ①~④ (생략)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<u>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·제3항</u> 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위원회"는 "실무위원회"로, "위원장"은 "실무위원장"으로 본다.	제5조(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실무위원회) ①~④ (현행과 같음)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<u>제4조제2항·제3항</u> 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위원회"는 "실무위원회"로, "위원장"은 "실무위원장"으로 본다.
제6조(시범운행지구 지정의 신청) ①·② (생략) ③ 둘 이상의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 및 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에 걸쳐는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	제6조(시범운행지구 지정의 신청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

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·도지사
가 공동으로 시범운행지구의
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④ (생략)

제7조(시범운행지구 지정의 기준)

①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심의회는
시·도지사가 작성하여 제출한
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서를 대
상으로 실시한다.

② (생략)

③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서에
대한 심의사항별 세부심의기준
및 심의항목별 배점은 별표 1과
같다.

④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서 심
의 결과 별표 1의 공통지표 및
각 사업별지표(시범운행지구 운
영계획서에 포함된 사업별 지표
에 한한다)의 100분의 70 이상
인 경우에 시범운행지구로 지정
한다.

제10조(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
특례) ① 법 제9조 및 영 제8조

---- 신청하여야 한다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시범운행지구 지정의 기준)

① -----

----- 운영계획서 또는
영 제5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
부장관이 수립한 시범운행지구
운영계획(이하 “운영계획”이라
한다)을 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운영계획-----

----.

④ ----- 운영계획-----

----- 운영
계획에 -----

--.

제10조(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
특례) ① -----

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는 <u>해당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가 제출한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서의 내용과</u> 부합하여야 한다. ② (생략) 제11조(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) ① 법 제10조 및 영 제9조에 따른 유상 화물운송 허가는 <u>해당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가 제출한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서의 내용과</u> 부합하여야 한다. ② (생략)	----- ----- <u>해당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에</u>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제11조(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) ① ----- ----- -- <u>해당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에</u>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--	---